

# 「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도시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조문의 근거 법령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근거 법률조항 문구 변경(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- 본 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 
근거 법령조항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며,
- 제5조(진흥계획) 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을 (개정)법 제6조제2항으로,  
제3항에서 법 제6조제4항을 (개정)법 제6조제5항으로 변경함.
- 검토결과,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